

제8장  
정부조달

제8.1조  
목적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.

제8.2조  
일반규정

1. 「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」의 부속서(이하 “개정 정부조달협정”이라 한다)의 규정과 각 당사국이 이에 관하여 약속한 양허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2. 개정 정부조달협정과의 일관성을 촉진할 목적으로,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이 제22.2조(개정)에 언급된 개정 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된다.
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정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제8.3조  
특명성

## 요약 공고

1. 이 장의 목적상, 적용대상조달에 관하여, 각 당사국(조달기관을 포함한다)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요약 공고를 공표하기 위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. 그 공고는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.

### 가. 조달의 대상

나.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, 적용 가능한 경우,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, 그리고

다.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

## 입찰 절차

2. 조달기관이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입찰 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,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로 한다.

## 제8.4조

### 추가 교섭

이 협정의 발효 후에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비당사자에 부여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동일한 시장 접근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.

## 제8.5조

### 정부조달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상호 관심 사안을 추구하는 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을 포함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.

가. 이 장의 이행 점검

나.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촉진

다. 관련 정보의 교환

라. 시장 접근 확대 추구, 그리고

마.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

3. 제2항의 목적상,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문의처로 지정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이스라엘의 경우, 경제산업부 무역청 또는 그 승계기관